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설치 등 타인 노출 금지〉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31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27인
2. 제안연월일 : 2024. 6. 27.
3. 회부연월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u>

최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외부에 내걸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끼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를 하는 등 욱일기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민 다수의 역사의식을 고려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이하 ‘군사기 등 설치 행위 등’)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한데, 군사기 등 설치행위 등은 「형법」 등에서 이를 직접 규율하기에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의 일환으로서 사회 규범적 성격을 가진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규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은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행위를 그 전 단계에서 발견하고 이를 제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형법」 등에서 정한 범죄

유형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충하는 점에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평균적 법 감정에 호소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방적 성격에 따라 경찰행정상의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도 다수 규율하고, 보충적·도덕적 성격에 따라 형법상 범죄행위보다 불법성이 낮지만 사회질서상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라고 판시한바 있음¹⁾.

개정안의 내용 중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에 육일승천기가 해당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이라는 표현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상징물만을 의미하는지, 제국주의 정부기관의 상징물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제안이유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개인의 아파트에 육일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짐.

참고로, 경찰청은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헌법 적합성 여부와 행위에 대한 책임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1)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마426 전원재판부 결정

외교부는 개정안의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고, 특정 국가의 군사기 및 조형물을 법령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외교적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